비산먼지 발생 억제/도료비산 방지장치

도료비산 방지장치

특허등록
제 10- 229089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2021. 12. 30.]
[법률 제17797호]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품 구성

피엠씨
도료비산 방지장치

스프레이 건

사용 예

* 추가 구성품

오링 –빨간 표시된 쪽이 안으로 오게 사용합니다.

스텐와샤

연장대(대)

연장대(중)2EA

제품 조립 순서 – 각 부품은 연장으로 단단히 고정하여 사용

①건 ② 연장대(중) ③오링
④스텐와샤 순으로 조립

①비산방지장치 ② 연장대 - 사용시 (중 or 중+대)
③팁 (스프레이건 구성품)
순으로 조립

PMC (주)피엠씨